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의 결산공시서류 작성방법 관련 상담자료

(1)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은?

- '17사업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
- '18.1.1. ~ '18.12.31.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
 - ※ (근거) 「공익법인회계기준」 부칙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 부기 등 적용특례)
 - ※ (유예기한) '19사업연도까지
('20사업연도부터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

(2)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맞추어 개정된 공시서식으로 공시해야 하는지?

- 예.
- 서식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맞추어 개정되었으나, 적용유예 대상 법인도 종전의 작성방법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 회계기준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이 개정전 서식으로 제출할 수는 없음

(3)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의 개정된 서식 신고 방법은?

- 개정 전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목적사업'란에 '수익사업'은 '기타사업'란에 작성합니다.
- 개정서식의 항목별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다음부터 차례로 설명합니다.

2. 재무현황 (신설)

-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순자산은 '소계'만 입력합니다.
- 전체 합계만 입력하므로 종전 작성방법대로 작성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이용하여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2. 재무현황		(단위: 원)				
구분	⑱총자산가액	⑲부채	⑳순자산			
			㉑소계	㉒기본순자산	㉓보통순자산	㉔순자산조정
㉕총계 (a=b+c)						작성생략 가능
㉖공익목적사업						
㉗기타사업						

3. 자산현황 (변동없음)

- 개정 전 서식과 변동이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3. 자산현황		(단위: 원)				
구분	㉘총자산가액	㉙토지	㉚건물	㉛주식 및 출자지분	㉜금융자산	㉝기타자산
㉞총계 (a=b+c)						
㉟공익목적사업						
㊱기타사업						

4. 수익현황 (일부개정)

- 회비수익이 별도로 구분되었으나,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회비수익을 구분하여 작성가능한 공익법인은 개정서식대로 작성하고,
 - 회비수익의 구분 작성이 어려운 공익법인은 종전과 같이 ‘㉔기부금’ 또는 ‘㉗기타’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종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은 ‘㉓기타사업→㉒사업수익→㉑소계’에 작성합니다.
- ‘사업외 수익’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이 추가되었으나, 종전 서식 수익 세부현황란에 구분 기재하였던 항목들이므로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단, 구분 기재가 어려운 경우 ‘㉗기타’란에 함께 기재합니다.

<개정 전>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단위: 원)

구분	㉔ 소득금액	㉕ 수입금액			
		㉖ 소계	㉗ 기부금	㉘ 보조금	㉙ 기타 사업수입
㉑ 총계 (a)=(b)+㉓)					
㉒ 고유목적사업					
㉓ 수익사업					

<개정 후>

4.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㉑ 총계	㉒ 사업수익					㉓ 사업 외수익	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㉕ 소계	㉖ 기부 금	㉗ 보조 금	㉘ 회비 수익	㉙ 기타		
㉑ 총계 (a)=(b)+㉓)								작성생략 가능
㉒ 공익목적사업								
㉓ 기타사업								

5. 비용현황 (일부개정)

- 일반관리비와 모금비가 별도로 구분되었으나,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일반관리비와 모금비를 구분할 수 있는 공익법인은 개정서식대로 작성하고,
 - 구분이 어려운 공익법인은 '㉔일반관리비'에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외 비용 등 기타'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란이 추가되었으나, 종전 서식 비용 세부현황란에 구분 기재하였던 항목들이므로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단, 구분 기재가 어려운 경우 '㉔기타'란에 함께 기재합니다.

<개정 전>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단위: 원)

구분	㉓ 필요경비		
	㉑ 소계	㉒ 목적사업비	㉓ 일반관리 및 모금비
㉔ 총계 (a=b+c)			
㉕ 고유목적사업			
㉖ 수익사업			

<개정 후>

5.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㉔ 총계	㉔ 사업비용					㉕ 사업외 비용 등 기타	㉖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전입액
		㉑ 소계	㉒ 사업 수행비용	㉓ 일반 관리비용	㉔ 모금 비용	㉕ 기타		
㉔ 총계(a=b+c)								
㉕ 공익목적사업							작성생략 가능	
㉖ 기타사업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항목추가)

- 적용 회계기준 항목만 추가되었으므로,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㉑ 복식부기 여부	[]여 []부	㉒ 적용회계기준	
㉓ 세무확인 여부	[]여 []부	㉔ 외부 회계감사 여부	[]여 []부

7. 확인란 (신설)

- 대표자 확인란이 신설되었으므로, 대표자가 결산 공시서류 전체를 확인하고, 그 대표자 명과 확인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개정 후>

7.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

확인일자 :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일부 개정)

- 사업내용이 세분화되었으므로, 공익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 내용에 중복하여 체크합니다.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즈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이하 개정사항 없음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일부개정)

○ ‘사업외 수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란이 추가되었으나, 종전 서식의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란에 각각 기재되었던 항목들이므로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단, 구분 기재가 어려운 경우 ‘4)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에 합하여 기재합니다.

<개정 전>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기부금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금액		
② 개인기부금		
③ 행사모금액		
④ 기업, 단체기부금		
⑤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⑥ 기타 기부금		
⑦ 기부물품		
2. 보조금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① 회원회비 수입		
② 등록금 수입		
③		
⑩		
4. 총 합계 (1+2+3)		

<개정 후>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사업수익			
1) 기부금품			
① 개인기부금품		작성생략 가능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④ 기타기부금품			
* 기부물품	당기	전기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작성생략가능	
2) 보조금			
3) 회비수익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2. 사업외 수익	작성생략 가능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4. 총 합계 (1+2+3)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일부개정)

- 다른 항목은 종전과 동일하고, ‘기타수익사업’ 항목만 ‘⑨기타’란과 ‘⑩사업외손익’란으로 구분되었으므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기재하고,
 - 구분 기재가 어려운 경우 ‘⑨기타’란에 종전의 ‘⑨기타수익사업’란에 작성할 금액을 적습니다.

<개정 전>

7.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수익사업							⑨ 기타 수익 사업
		금 용				부 동 산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개정 후>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기타사업손익 사업손익							⑩사업 외손익
		금 용				부 동 산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금융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작성
생략
가능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일부개정, 간소화)

- 종전 서식보다 작성 항목이 감소하였으므로, 종전 서식항목 상 금액을 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작성합니다.
- 추가된 ‘사업외 비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란은 종전 서식의 ‘기타비용’란에 각각 기재되었던 항목들이므로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단, 구분 기재가 어려운 경우 ‘④기타비용’란에 합하여 기재합니다.

< 그림 >

< 개정 후 >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전 기
	합계	당 기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1. 사업비용					
① 분배비용(정화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1) 국 내					
2) 국 외					
② 인력비용					
③ 시설비용					
④ 기타비용	나머지 모든비용 합계				
2. 사업외비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 총 합계 (1+2+3)					

작성생략 가능

시설과 관련한 비용에 한함

< 개정 전 >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합계	당 기	
		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① 목적사업 지출금			
1) 국 내			
2) 국 외			
② 회원관리비			
③ 급여			
1) 상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④ 퇴직급여			
⑤ 사회보험부담금			
⑥ 복리후생비			
⑦ 업무추진비			
⑧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			
⑨ 기타 모금비용			
⑩ 회의비			
⑪ 여비교통비			
⑫ 통신비			
⑬ 수도광열비			
⑭ 임차료			
⑮ 재금과 공과금			
⑯ 수선비			
⑰ 보험료			
⑱ 차량유지비			
⑲ 교육훈련비			
⑳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㉑ 사무용품비			
㉒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지문 등)			
㉓ 외주비			
㉔ 감가상각비			
㉕ 무형자산상각비			
㉖ 광고선전비			
㉗ 이자비용			
㉘ 기타 비용			
1)			
2)			
3)			
4)			
5)			
총 합계 (①~㉘)			

11.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일부개정)

- 지출월을 생략하여 서식을 간소화 한 대신 기부금품의 투명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수혜자(단체)에게 1인(단체)당 연간 1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별도 명세를 작성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개별 입력해야하는 양이 많은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엑셀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일괄 업로드하면 편리합니다.
 - 2018사업연도에 장학금, 지원금 등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면서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작성이 어려운 경우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019사업연도부터는 작성 필요).
- ※ 개정서식의 작성방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서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식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수정) 이 서식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예:①현금·현물을 기부받은경우→실제 기부받는시점, ②가상계좌,CMS,지로,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 → 기부 결재시점(기부금 납부,출금요청,신용카드 승인시점 등).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삭제) 다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 후>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수혜인원 (단체) 수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2018 사업연도 미수집 시 작성생략가능 (2019사업 연도부터는 생략 불가)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12. 기타서식 개정사항

- 개정된 서식에 기재된 작성방법대로 작성합니다.

13. 재무상태표 (일부개정)

- 종전 서식과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으므로 종전 서식의 작성방법대로 개정된 서식의 항목을 작성합니다.
 - 개정 전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목적사업'란에 '수익사업'은 '기타사업'란에 작성합니다.
 -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취득가액 등 종전의 회계처리에 따라 그 가액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항목이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 '기본순자산'은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자산을 말하며, '자본금, 출연기본금, 기본재산, 사용제한 순자산,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등' 기존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자산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보통순자산'은 법인의 운영활동,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의미하여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기재합니다.
 - '순자산조정' 란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등을 기재하는 란이지만, 적용 유예법인의 경우 공란으로 둘 수 있습니다.
- '18사업연도의 경우 '전기' 금액을 '공란'으로 두어도 됩니다.

<개정 후>

과 목	코드	당 기			전 기		
		통합①	공익목적사업②	기타사업③	통합④	공익목적사업⑤	기타사업⑥
순자산							
I.기본순자산	111	xxx	xxx	xxx	작성 생략 가능		
II.보통순자산	112	xxx	xxx	xxx			
1.적립금	113	xxx	xxx	xxx			
2.잉여금	114	xxx	xxx	xxx			
III.순자산조정	115	작성 생략 가능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116						
2.유형자산재평가이익	117						
3.기타	118						
순자산 총계	119	xxx	xxx	xxx			

14. 운영성과표

○ 아래의 그림과 같이 종전의 작성방법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운영성과표
계*기 20xx년x월x일부터 20xx년x월x일까지
계*기 20xx년x월x일부터 20xx년x월x일까지

공익법인명 (단위: 원)

과목	코드번호	당기			전기		
		통합①	공익목적사업②	기타사업③	통합④	공익목적사업⑤	기타사업⑥
I. 사업수익	1	xxx	xxx	xxx			
가. 기부금수익	2	xxx	xxx	-			
나. 보조금수익	3	xxx	xxx	-			
다. 회비수익	4	xxx	xxx	-			
4. 투자자산수익	5	xxx	xxx	xxx			
가. 이자수익	6	xxx	xxx	xxx			
나. 배당수익	7	xxx	xxx	xxx			
다. 기타	8	xxx	xxx	xxx			
5. 매출액	9	xxx	xxx	xxx			
6. 기타	10	xxx	xxx	xxx			
가.	11	xxx	xxx	xxx			
나.	12	xxx	xxx	xxx			
다.	13	xxx	xxx	xxx			
라.	14	xxx	xxx	xxx			
마.	15	xxx	xxx	xxx			
바.	16	xxx	xxx	xxx			
사.	17	xxx	xxx	xxx			
아.	18	xxx	xxx	xxx			
II. 사업비용	19	xxx	xxx	xxx			
1. 사업수행비용	20	xxx	xxx	xxx			
가. 분배비용	21						
나. 인력비용	22						
①급여	23						
②상여금	24						
③퇴직급여	25						
④복리후생비	26						
⑤교육훈련비	27						
⑥기타	28						
다. 시설비용	29						
①감가상각비	30						
②지급일차료	31						
③시설보험료	32						
④시설유지관리비	33						
⑤기타	34						
라. 기타비용	35						
①여비교통비	36						

작성생략 가능

과목	코드번호	당기			전기		
		통합①	공익목적사업②	기타사업③	통합④	공익목적사업⑤	기타사업⑥
3. 모금비용	81	xxx	xxx	-			
가. 인력비용	82						
①급여	83						
②상여금	84						
③퇴직급여	85						
④복리후생비	86						
⑤교육훈련비	87						
⑥기타	88						
나. 시설비용	89						
①감가상각비	90						
②지급일차료	91						
③시설보험료	92						
④시설유지관리비	93						
⑤기타	94						
다. 기타비용	95						
①여비교통비	96						
②소모품비	97						
③지급수수료	98						
④용역비	99						
⑤업무추진비	100						
⑥회의비	101						
⑦대손상각비	102						
⑧	103						
⑨	104						
⑩	105						
⑪	106						
⑫	107						
⑬	108						
⑭	109						
⑮	110						
4. 기타사업비용	111	xxx	xxx	xxx			
가. 인력비용	112	xxx	xxx	xxx			
①급여	113	xxx	xxx	xxx			
②상여금	114	xxx	xxx	xxx			
③퇴직급여	115	xxx	xxx	xxx			
④복리후생비	116	xxx	xxx	xxx			
⑤교육훈련비	117	xxx	xxx	xxx			
⑥기타	118	xxx	xxx	xxx			
나. 시설비용	119	xxx	xxx	xxx			
①감가상각비	120	xxx	xxx	xxx			

작성생략 가능

과목	코드번호	당기			전기		
		통합①	공익목적사업②	기타사업③	통합④	공익목적사업⑤	기타사업⑥
2. 일반관리비용	51	xxx	xxx	-			
가. 인력비용	52	xxx	xxx	-			
①급여	53	xxx	xxx	-			
②상여금	54	xxx	xxx	-			
③퇴직급여	55	xxx	xxx	-			
④복리후생비	56	xxx	xxx	-			
⑤교육훈련비	57	xxx	xxx	-			
⑥기타	58	xxx	xxx	-			
나. 시설비용	59	xxx	xxx	-			
①감가상각비	60	xxx	xxx	-			
②지급일차료	61	xxx	xxx	-			
③시설보험료	62	xxx	xxx	-			
④시설유지관리비	63	xxx	xxx	-			
⑤기타	64	xxx	xxx	-			
다. 기타비용	65	xxx	xxx	-			
①여비교통비	66	xxx	xxx	-			
②소모품비	67	xxx	xxx	-			
③지급수수료	68	xxx	xxx	-			
④용역비	69	xxx	xxx	-			
⑤업무추진비	70	xxx	xxx	-			
⑥회의비	71	xxx	xxx	-			
⑦대손상각비	72	xxx	xxx	-			
⑧	73	xxx	xxx	-			
⑨	74	xxx	xxx	-			
⑩	75	xxx	xxx	-			
⑪	76	xxx	xxx	-			
⑫	77	xxx	xxx	-			
⑬	78	xxx	xxx	-			

작성생략 가능

과목	코드번호	당기			전기		
		통합①	공익목적사업②	기타사업③	통합④	공익목적사업⑤	기타사업⑥
3. 모금비용	79	xxx	xxx	-			
⑧	80	xxx	xxx	-			
3. 모금비용	81	xxx	xxx	-			
가. 인력비용	82						
①급여	83						
②상여금	84						
③퇴직급여	85						
④복리후생비	86						
⑤교육훈련비	87						
⑥기타	88						
나. 시설비용	89						
①감가상각비	90						
②지급일차료	91						
③시설보험료	92						
④시설유지관리비	93						
⑤기타	94						
다. 기타비용	95						
①여비교통비	96						
②소모품비	97						
③지급수수료	98						
④용역비	99						
⑤업무추진비	100						
⑥회의비	101						
⑦대손상각비	102						
⑧	103						
⑨	104						
⑩	105						
⑪	106						
⑫	107						
⑬	108						
⑭	109						
⑮	110						
4. 기타사업비용	111	xxx	xxx	xxx			
가. 인력비용	112	xxx	xxx	xxx			
①급여	113	xxx	xxx	xxx			
②상여금	114	xxx	xxx	xxx			
③퇴직급여	115	xxx	xxx	xxx			
④복리후생비	116	xxx	xxx	xxx			
⑤교육훈련비	117	xxx	xxx	xxx			
⑥기타	118	xxx	xxx	xxx			
나. 시설비용	119	xxx	xxx	xxx			
①감가상각비	120	xxx	xxx	xxx			

작성생략 가능